# 서울특별시 김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2818

2021. 11. 26. 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10월 15일, 김기덕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】

-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11.26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김기덕 의원)

## 1. 제안이유

 현행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에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및 민원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넣는 경우 등으로 고통 받는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해당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함(안 제2조제4호).
- 나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(안 제15조제4호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하고,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되는 수준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등의 악성민원 행위를 금지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 나.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화

- 최근 연간 6천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자살(2021.1.)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・폭행・위협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에 의한 공무원의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.
  - 행정안전부 통계1)에 따르면, 2020년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및 교육청

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·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 6,079건으로, 2019년 3만 8,054건 대비 19.7%(7,575건)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포함된 「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」을 배포하고, 국회에서도 상습・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・지원조치를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음.

#### <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 현황 >

| 법률명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| 제안자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  | 민원인 등의 폭언·폭행에 대한 민원 처리<br>담당자 보호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| 정부(2021.4.2.)   |
|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  | 폭언이나 성희롱,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<br>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     | 강득구(2021.4.29.) |
|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  |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<br>조치 신설                    | 이해식(2021.6.29.) |
| 「귁몽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법」 |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<br>보호조치 신설                | 이형석(2021.4.29.) |

- 서울시도 반기별로 대민부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현황을 조사하고,
  악성민원 처리가 빈번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 직위로
  지정하거나 민원통화시 안내멘트와 전화녹음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.
-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구속력 있는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.

<sup>1) 「</sup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9283호) 국회 검토보고서 4p. 인용.

-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하여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・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공무원에게 조례에 따른 보호조치²)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조제4호),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 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반복・상습적 민원 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(안 제15조제4호).
-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.
- 다만, 현행 조례의 노동자 보호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3)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「근로기준법」이나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의 근로자(노동자)가 아닌 바, 조례의 적용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면 법률과 조례의 적용대상이 달라져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.
- 또한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은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 없이 민원 처리의 절차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고(제6조),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

<sup>2)</sup> 민원인과의 분리, 치료와 상담 지원, 악성 민원인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

<sup>3) 「</sup>산업안전보건법」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"폭언등"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음(제23조).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민원 처리의 원칙) ① (생략)

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3조(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<u>동일한 내용의 민원(법정</u>민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,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.

○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반복민원의 제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할 수 있고, 반복민원에 대한 직권종결 요건이 현행 법률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를 고려한신중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Ⅵ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818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:김기덕, 강대호, 김기대, 김정환, 김제리, 박순규, 봉양순, 송명화, 송재혁, 송정빈, 유정희, 이상훈, 임종국, 황규복 의원(14 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현행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대 상에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및 민원을 지나치게 반복 적으로 넣는 경우 등으로 고통 받는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해당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함(안 제2조제4호)
- 나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 하여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(안 제15조제4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(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"를 "(공무워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1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    | 제2조(정의)            | 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1. ~ 3. (생 략)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|  |
| 4. "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"란 제     | 4                  |  |
| 2호와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<u>(「근로기</u> | (공무                |  |
| 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         | <u>원을 포함한다)</u>    |  |
| <u>자를 말한다)</u> 를 말한다.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5.・6. (생 략)              | 5.・6. (현행과 같음)     |  |
| 제15조(금지행위) 고객은 서울시 감     | 제15조(금지행위)         |  |
| 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1. ~ 3. (생 략)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| 4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     |  |